

東西洋에 있어서 東洋資料에 대한 圖書館利用者(完)

M. B. Line 著
黃文成譯
(國立中央圖書館)

世界刊行物利用制度의 障碍要素

上記한 바의 費用의 返還請求나 辨濟上의 困難性과는 別途로 關稅規定은 또 하나의 利用에 對한 障碍要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特히 稅關官吏들은 마이크로 形態의 資料에 대해 疑懼心을 보이며 또한 餘他의 非圖書資料에 對하여 疑訝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는 標準라벨에 使用에 依해서 特히 萬一 그러한 라벨이 國立圖書館이나 國立센터의 權威를 內包하고 있는 경우 克服될 수 있을 것이다.

重要한 것은 아니지만 克服하기 어려운 또하나의 障碍要因은 檢閱바로 그것이다. 特定國家에서는 特定出版物을 禁止시키고 있으며 實際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一部出版物의 輸入을 禁止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世界刊行物利用制度란 위와같은 制限措置가 남아 있는 限窮極的으로 期待不可能하지만 그것이 IFLA나 其他 機關이 解決하기 爲한 그 어떤 措置를行使할 수 있는 問題는 아닌 것이다.

끝으로 著作權의 問題는 이미 言及된 바 있다. 1960年代의 定期刊行物增加의 엄청난 量產에 뒤이어 最近의 經濟的 景氣後退는 各圖書館으로 하여금 그 圖書購入費를 削減토록 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이는 大量의 定期刊行物出版業者에게 深刻한 問題를 招來하였다. 定期刊行物購入을 取消하는 것만을 例外로 하고 餘他機關으로부터 複寫에 對한 需要增加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資料에 對하여 支拂을 하여 주도록 要請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아울러 複寫에 制限을 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 또 다른 나라로부터의 資料輸入은 禁止되거나 制限을 받기 까지한다. 이러한 傾向은 國際情報傳達에 있어 極히 深刻할 수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各國에서 매우 多樣한 規制法規가 通過될 危險이 있으며 이는 相異한 程度의 著作權使用料를 要求하여 複寫를 許容하는 바에 따라 相異한 規制措置를 課하는 것이다. 如何든 出版業者에게

實際的으로 支拂함이 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그 國家에서 合法的으로入手할 수 있는 資料를 얻는 것은 不法의일 수 있으며 이와 反對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萬一 著作權使用料支拂要件이 實際上 寫本을 만드는 圖書館에 나타난다면 이와같은 要件은 複寫하는 圖書館이 또 다른 國家內에 있는 경우 強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으로 複寫資料를 供給하는 것이 아니라 道德的義務에 立脚하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特殊問題는 萬一 如何한 支拂義務가 資料를 個別의 利用者에게 보내는 圖書館에 確定된다면 克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資料의 出原地에 關係없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出版者는 그의 支拂을 받는 일이 보다 實質할 수 있다. 이는 解決할必要가 있는 여러가지 問題가운데의 그 하나에 不過하다.

世界刊行物利用制度를 爲한 센터의 機能

世界刊行物利用制度에 對한 活動을 하기 爲해서 각 國에서 大量의 일과 小量의 일과를 進行할 수 있어야 함은 自明한 事實이다. 그러나 集中的統合調整과 支援이 素要한 것이다. 이와같은 센터機能가운데 여러가지가 位에서 說明된 바 있다. 그러한 機能은 다음과 같이 列舉할 수 있다.

1. 資料利用의 確保를 爲한 選別的 國家의 씨스템 및 그려한 씨스템을 發展시킴에 있어 各國에 對한 指導方案마련에 關한 比較研究
2. 現在의 趨勢를 알아 보기 爲하여 國際貸出問題點等에 對한 傾向을 把握키 爲한 統計資料의 蔽集
3. 各國內의 資料利用과 그에 依する 發展狀況을 評價하기 爲한 定期的研究에 依한 現況研究
4. 基本的 處理方案에 關한 計劃 및 推進
5. 著作權에 對하여 特히 留意하면서 世界刊行物利用制度의 諸般 障碍要因에 對한 分析

6. 支拂辨濟方式과 諸原則에 對한 研究
7. 一定範疇의 資料에 對한 地域의 내지 世界的 資料蒐集센터와 같은 可用性을 促進시키는 選擇可能한 手段方法에 對한 檢討

8. 個別的 資料要請을 充足시키거나 システム改善을 爲한 例外的으로 困難한 資料要請을 爲한 交換센터로서의 管理運營

9. 特히 國家情報시스템(NATIS)와 IFLA 및 유네스코의 諸般 計劃이나 여러 提案과의 連繫

이와같은 여러가지 機能을 達成하려 爲해서 定期적으로 많은 情報資料의 蒐集이 必要하며 最善의 方案을 講究하기 위하여 運營面의 研究檢討나 其他 여러가지의 研究를 遂行할 必要가 있으며 著作權法이나 技術的側面에서의 輸送上の 發展의側面等과 같은 問題의 發展狀況에 對해 定期的인 注視가 繼續되어야하며 各國에 對한 訪問의 必要性도 있으며 定期的 研究報告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第1次의인 措置가운데의 하나는 各國의 現況에 對한 徹底한 調查를 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需要比重이相當하고 한편 그에 對한 供給이 相對的으로 貧弱한 刊行物에 特히 注目한 結果에 따른 것이다. 各國의 世界刊行物利用制度에 對한 研究檢討와 併行하여 資料利用에 있어서의 不充分한 資料에 對한 檢討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는 現在의 制限된 利用可能性은 需要를 壓迫할 수 있다는 事實을 恒常 留意하면서 國際貸出上의 不足한 資料에 對한 分析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初期段階에 있어서 資料의 一般的 利用에 對한 具體的 計劃은 國家情報시스템에 融合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國家情報시스템의 目的인 長期的 活動計劃의 一環임을 確實히 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1978年度 政府間會議計劃上의 主題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위에 刊擧한 바의 여러 機能가운데의 一部는 制限의 이지만 英國圖書館貸出部의 IFLA 國際貸出局에 依하여 이미 着手되고 있다. 가령 國家의 資料利用에 對한 豫備的研究는 비록 反應이 部分的이기는 하지만 着手되며 있다. 이와함께 不完全한 統計資料도 蒐集되었다. IFLA 貸出方式을 改善시키기 爲하여 여러가지 努力이 傾注되며 有 있으며 아울러 處理方法의 標準化作業을 爲해서도 努力한 바 있다. 모든 文書綴은 各國에서의 貸出制度를 收錄한 文獻으로 漸次 改造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을 比較함이 보다 容易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概念으로서의 世界刊行物利用制度는 國際貸出보다範圍이 넓은 것이다. 即 그 것은 資料交換, 一般的 研究書館, 圖書館資料蒐集 및 奉仕活動, 管理技法, 地域의 여러 活動 및 定期刊行物이나 公刊行物等과 같은

特殊한 範疇의 資料에 關聯이 있는 것이다.

結語

따라서 멀지 않은 將來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는 IFLA에 依해서 決定되어야만 한다. 첫째는 世界刊行物利用制度가 世界書誌의 方針에 立脚하여 IFLA內의 여러重要性을 代表하는 運營委員會 및 諮問委員會를 必要로 하는가의 與否인 것이다. 둘째로는 이미 國際센터의 大部分의 必要한 機能을 部分的이지만 遂行하는 國際貸出국이 出版物의 一般的 可用性에 關한 全般的인 計劃에 있어 範圍나 規模面에서 充分한가 하는 것이다. 以上 두가지의 選擇的 方案은相當히 非經濟的인 것으로 보이는 獨立的인 世界刊行物利用制度事務局을 設立하거나 IFLA의 中期計劃上에 提示된 바와 같이 必要한 程度까지 國際貸出局을 補強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上記 두가지의 方案 으느 쪽도 IFLA, UNESCO, 圖書館資料委員會 및 各國의 國立圖書館 및 書誌機關으로부터의 外部的 支援을 必要로 한다.

世界刊行物利用制度란 世界書誌統整과 같이 全體的概念은 아닌 것이다. 可用性에 對한 如何한 改善案도 世界的 可用性으로 向한 발돋움인 것이다. 이리하여 發展速度는 繼續的 發展에 比하여 重要한 것이 못된다. 國立圖書館의 一部로서의 르망에서의 貸出資料蒐集을 爲한 프랑스의 計劃을 벌써 展開된 바 있으며 國家定期刊行物蒐集을 爲한 美國의 提案에서도 考慮되고 있다. 이는 他國에서도 發見되는 圖書館業務集中化로 向한 一般的 傾向의 斷面임이 分明하다. 앞으로 數年은 마찬가지의 發展相을 보일 것임이 分明하다고 해서 國際的 統合調整計劃을 너무 急히着手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이 글을 執着함에 있어相當한 도움을 주신 IFLA 國際貸出局職員인 Stephen Vickers에게 謝意를 表하고자 하는 바이다.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 오는 우리 사회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